

해수부·부산 세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합동 점검 실시

- 45일 이내 시장공급 의무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 취소 등 엄정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4일(화)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2만 5천 톤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며,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6일 진행된 1차 합동 점검에 이어 연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고등어가 시중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와 현장의 실제 반출량 등을 대조해 시장 공급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있다."라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 현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1-773-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장석준 (051-773-5447)

참 고

할당관세 현장점검 개요

□ 할당관세 개요

- (정의)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인화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40% 범위 내)
- (근거) 「관세법」 제71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 (절차) 할당관세 신청(각 부처) →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재경부) → 할당관세 추천요령 개정(각 부처)
- (우리 부 할당관세 품목) 냉동고등어/ (기간) '26.2.12~12.31, (물량) 2.5만톤, (관세율) 10 → 0%
cf. 농림부 3개 품목(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 점검 개요

- (목적) '26년 할당관세(냉동 고등어) 물량을 추천받은 업체의 물량 보관처를 방문하여, 할당관세 물량 반출 의무 준수 여부 확인
- (일자) '26. 7. 14.(화)
- (참석자) 해수부 담당자, 부산 세관(수출입물류과) 담당자, 수협 중앙회
- (점검 내용)
 - (서류 확인) 반출 완료 신고 사항과 실제 반출 여부·반출량 점검, 잔여 물량 보관 현황과 반출 예정일 확인, 출고확인증 확인 등
 - (보관 물량) 냉동 창고 내 잔여 물량과 보관 상태 확인, 포장된 냉동 고등어 상태 점검 등